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김승택 소유물건(2025타경103942)

의뢰인 : 사법보좌관 김영태

감정서번호 : AI-2025092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70-4513-1824 FAX. 0505-182-4330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준형

(인)

감정평가액	삼익이천사백만원정 (₩324,000,000.-)					
의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영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승택 (2025타경103942)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9. 25	2025. 09. 24 ~ 2025. 09. 25	2025. 09. 25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m²)	종류	면적 또는 수량(m²)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	32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2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2계의 경매(2025타경103942)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9월 25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9월 24일 ~ 2025년 9월 25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 ①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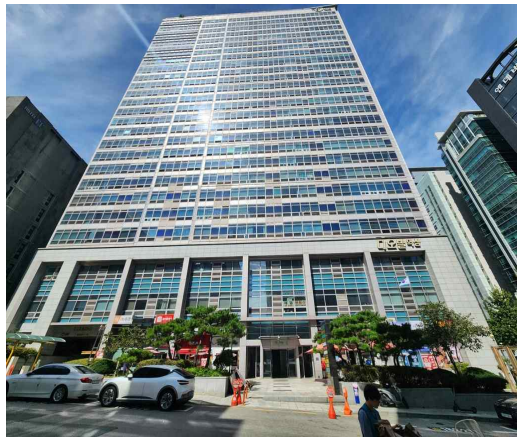
3. 기타 참고사항

- ①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거 하였음.
- ② 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등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감정평가전례, 인근 탐문조사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였는바, 이용상황 및 실제 구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업무진행시 확인바람.
- ③ 대상물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로 평가하였으며, 귀 요청에 의거 토지가격(적정지분)과 건물가격을 배분하여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④ 대상물건 감정평가시 인용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세부지번은 "***"처리 하였으니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의 개요

소재지·건물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7 (역삼동, 디오빌역삼)		
	주용도	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510개호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02.06.25	
	건물규모	층수	지하 5층/지상 26층
		연면적	38,875.317 m ²
	비고	-	

2. 각 호별 상세 개요

일련 번호	동/ 층/호수	용도	건물면적(m ²)			대지권 (m ²)	비고 (전용률 (%))
			전유	공용	분양		
1	디오빌역삼/ 12/1212호	아파트	30.03	24.91	54.94	4.051	54.66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으로, 시장의 통상적인 분양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감정평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는데, 구분건물(집합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로 적용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평가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평가방법

평가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건물(집합건물)로서 관련 규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는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text{감정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감정평가시 고려사항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 층/호	용도	면적(m ²)		거래가액(원) (원/전유m ²)	거래시점 (사용승인)	비고
				전유	분양			
#1	역삼동 720-**	16/16**	아파트	30.03	54.94	290,000,000 (@9,660,000)	2025.03.19 (2002.06.25)	-
#2	역삼동 720-**	8/8**	아파트	30.03	54.94	295,000,000 (@9,820,000)	2024.12.09 (2002.06.25)	-
#3	역삼동 720-**	26/26**	아파트	36.96	67.619	430,000,000 (@11,600,000)	2025.09.13 (2002.06.25)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유사한 집합건축물 내의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사례 #1 > : 일련번호 1

(3) 사정보정

의 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4) 시점수정

(가) 적용기준

■ 비교 거래사례#1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아래 표 참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시군구	상승률 (시점수정치)	산출근거			
서울 강남지역 동남권 강남구 아파트	9.856% (1.09856)	거래시점 / 기준시점		2025.03.19/ 2025.09.25	
		매매가격 지수	사례거래 당시 지수	2025.02	97.4
			기준시점 당시 지수	2025.08	107.0
		산식		$1 + (107.0 - 97.4) / 97.4$ ≈ 1.09856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해당월 지수가 미발표시 가장 최근 발표된 지수를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일련번호 1 / 비교사례 #1]

조 건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2	본건은 사례대비 향별, 위치별 효용 등에서 우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감정평가목적 및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고려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누계)		1.020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일련 번호	층/ 호수	전유 (사정) 면적(m²)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m²)		
			일련 번호	단가 (원/전유m²)						
1	12/ 1212	30.03	#1	9,660,000	1.000	1.09856	1.020	10,800,000	324,324,000	32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참고가격자료

1.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구 분	거래수준(원/전유㎡)	기타
유사평형 기준	9,000,000-11,000,000	-

2.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3.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용도	면적(㎡)		감정평가액(원) (원/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분양			
(1)	역삼동 720-**- 14/14**	아파트	30.03	54.94	288,000,000	2024.10.07 (2002.06.25)	일반거래
					(@9,590,000)		
(2)	역삼동 720-**- 2/2**	오피스텔	54.665	116.848	451,000,000	2023.06.30 (2002.06.25)	법원경매
					(@8,250,000)		
(3)	역삼동 719-**- 16/16**	업무시설 (오피스텔)	39.187	94.514	572,000,000	2025.02.14 (2019.04.24)	담보
					(@14,600,000)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임.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4. 경매동향

용도별	서울 강남구 2024년 09월 ~ 2025년 08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아파트	224,106,666,667	225,606,298,964	100.7	167	86	51.5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m²)	대지권(m²)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30.03	4.051	324,000,000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사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용 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공동주택 (아파트)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6층				
				지1층	2,361.989			
				지2층	2,348.521			
	[도로명주소]			지3층	2,346.638			
	서울특별시			지4층	2,341.097			
	강남구			지5층	1,758.294			
	연주로			1층	903.696			
	427			2층	1,283.826			
	(역삼동,			3층	1,283.828			
	디오빌역삼)			4층 ~ 26층 각	1,054.2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제1212호 철근콘크리트조	30.03	30.03	324,000,000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 부분 포함 54.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대		2,867.6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용 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대지권의종류:			1.소유권				
	대지권의비율:			1.	4.051 ---- 2,867.6	4.051 토지·건물 토 지: 건 물:	배분내역 226,800,000 97,200,000	
	합 계						₩324,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6층 건물 내 제12층 제121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6.25.)
외벽:석제타일 치장 마감 등
바닥:타일 깔기 마감 등
창호: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역삼동 720-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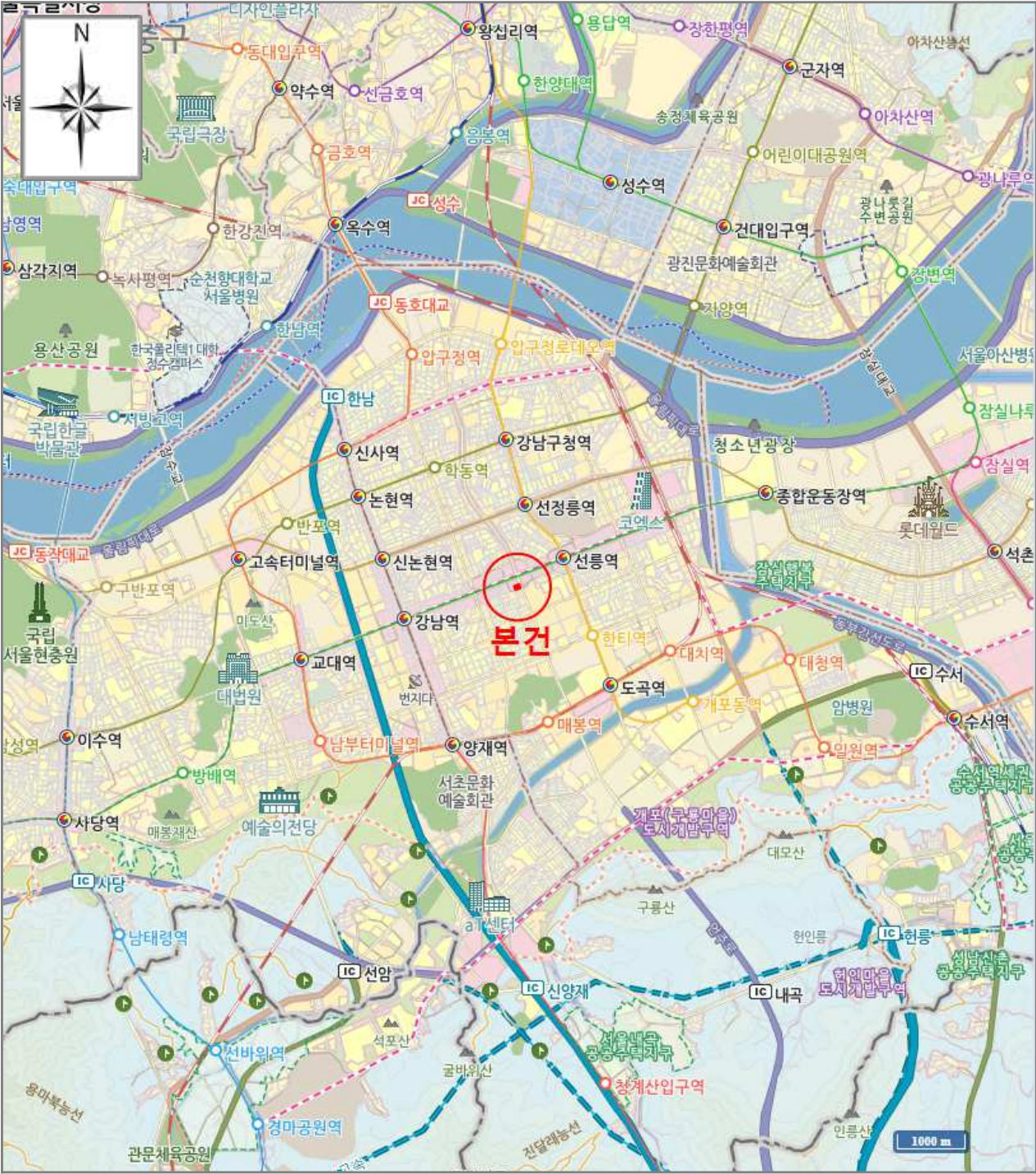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	--



[범례]

■ 본건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상세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	--



[폼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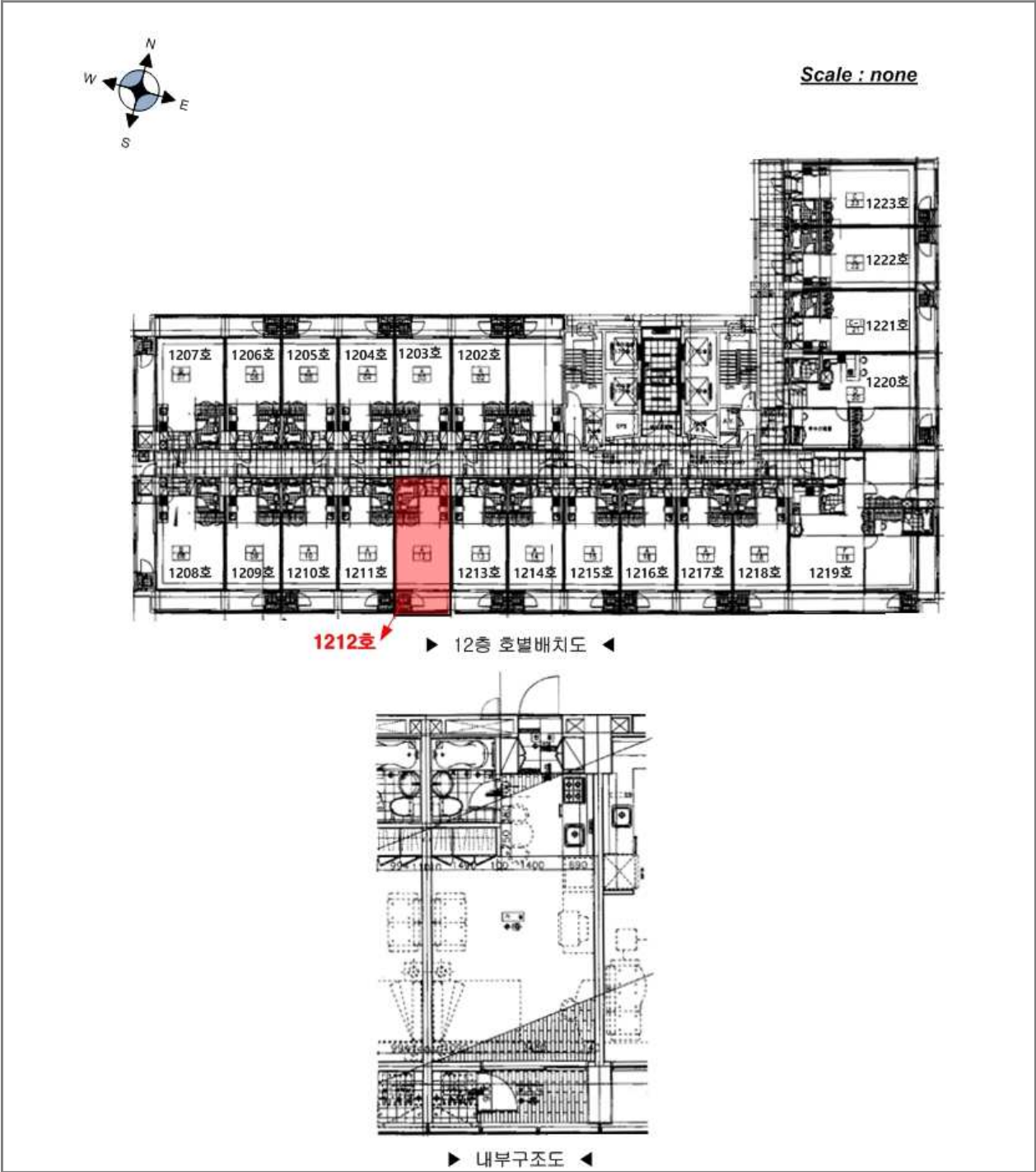
■ 본 건

■ 평가사례

■ 거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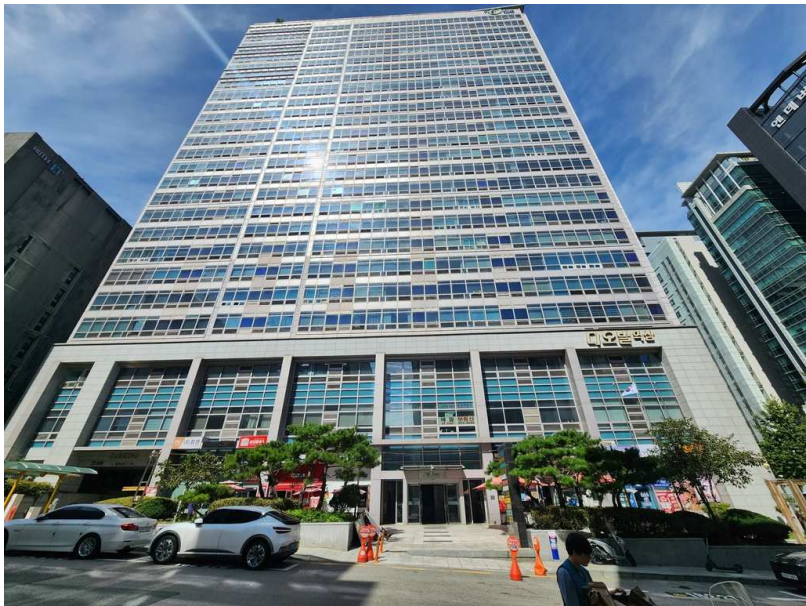
내 부 구조 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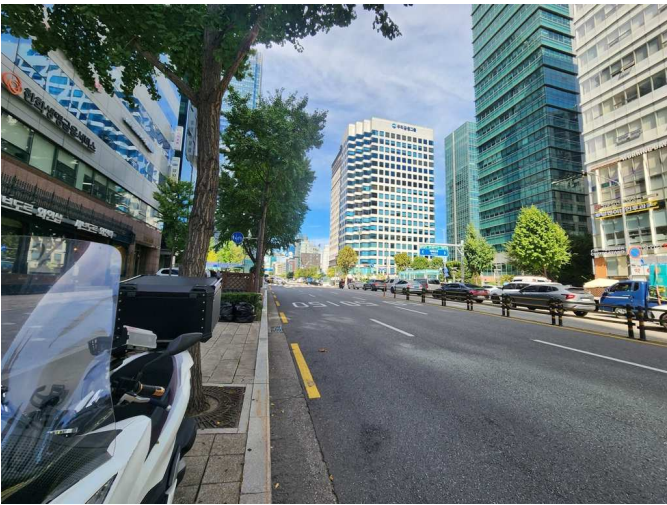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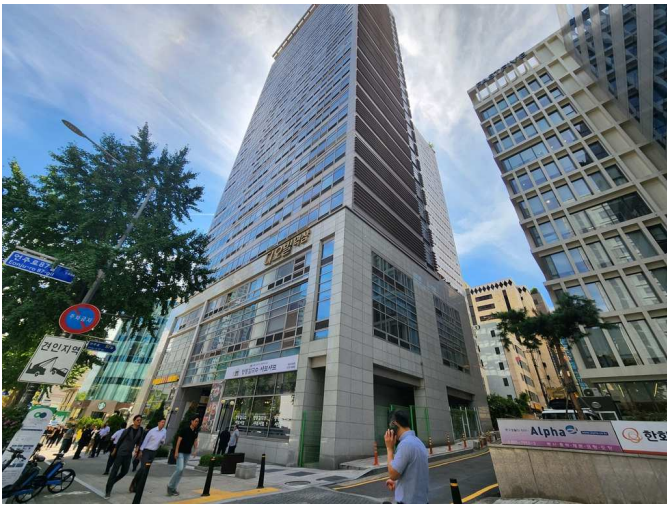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	--



본건 건물 전경



주위 환경



본건 건물 전경1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25 디오빌역삼 제12층 제1212호
-----	--



본건 공동 출입구



12층 복도 전경



본건 현관문